

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‘강원도 내 중·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’ 추진에 따라 시군별 상이한 지원기준과 집행절차를 통일하여,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※ 강원도 「중·고교 신입생 교복지원」 추진 관련 협조 요청(2020.1.9.)

2. 주요내용

가. 학생의 정의는 제4조의 지원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(안 제2조제2호)

나. 교복 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여 시군별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(안 제4조)

- 당초: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

- 변경: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

다. 지원방법에 타 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·정산의 편의 도모(안 제6조)

-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당초예산에 27,450천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2.19 ~ 3.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강원도 협조 요청 문서 : 강원도 교육법무과-300(2020.1.9.)

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<u>학생</u>"이란 <u>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</u>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<u>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</u>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<u>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</u>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.</u></p>

[붙임]

평화와 번영 강원시대



강 원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중·고교 신입생 교복지원」 추진 관련 협조 요청

도-시군-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「중·고교 신입생 교복지원」과 관련, 지난 협의회('19.12.18.)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안사항	추진계획	시군 조치사항
시군별 사업비 집행절차 통일	시군비는 '자치단체 간 부담금'으로 도에 납부하고 도에서 시군비 포함하여 교육청으로 일괄 교부	'예산변경' 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08-07로 통계목 변경 → 5월 말까지 도에 납부 * 4월 중 고지서 송부(예정)
시군별 대상자 지원 기준 통일 (학교 소재지 또는 학생 주소지)	집행·정산의 편의와 지원자 누락 방지를 위해 '시군별 소재 학교'에 대해 지원 예시) ○○군 학생이 △△시 소재 학교를 다닐 경우, ⇒ △△시에서 지원	기존 조례에 지원대상을 관내 주소지를 둔 경우로 제한한 경우, 조례 개정 (5월 말까지) - 지원대상 범위 변경 또는 단서 조항 추가 등 * 단서 조항 예시) 위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

끝.

강 원 도 지 사

수신자 춘천시장(행정지원과장), 원주시장(자치행정과장), 강릉시장(기획예산과장), 동해시장(문화교육과장), 태백시장(평생교육과장), 속초시장(교육청소년과장), 삼척시장(평생교육과장), 홍천군수(행정과장), 횡성군수(자치행정과장), 영월군수(자치행정교육과장), 평창군수(교육체육과장), 정선군수(여성청소년과장), 철원군수(인재육성과장), 화천군수(교육복지과장), 양구군수(교육생활지원과장), 인제군수(자치행정담당관), 고성군수(자치행정과장), 양양군수(자치행정과장)

지방행정주사

교육지원담당

교육법무과장

2020. 1. 9.

협조자

시행 교육법무과-300

(2020. 1. 9.)

접수 교육체육과-265

(2020. 1. 9.)

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(봉의동) / <http://provin.gangwon.kr>

전화번호 033-249-2292 팩스번호 033-249-4015 / exile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[붙임]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,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,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,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·고등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.
3. “교복”이란 중·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.
4. “교복비”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,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
2.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
3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

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「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
연락처	(033) 330 - 2020